

가입안내

상품종류

연금지급 형태

즉시형	기본형	보장개시일부터 만 1개월이 되는 날부터 매월 지급
거치형	기본형	거치기간 지난 후 연금개시일부터 매월 계약매당일에 지급
	무사망형	

연금지급 방법/보험기간

연금지급형태			즉시형	거치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종신 연금형	개인 연금형	정액형	종신	가입일부터 연금개시나 계약매당일의 전일까지	종신
		10년 보증형			
		20년 보증형			
		30년 보증형			
	100세 보증형				
	기대여명보증형				
	초기 집중형	5년형			
10년형					
15년형					
상속 연금형	종신형	10, 15, 20년			10, 15, 20년
	만기형				

* 거치형 무사망형의 경우 가입시 연금형태는 종신연금형만 선택 가능합니다. (성립 후 변경 가능)

* 100세보증형이란 [(101세-연금개시나이)년보증형]을 말하며, 초기집중형의 경우 지급배수(2배)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가입나이/연금개시나이

구분		연금개시나이	가입나이
즉시형	기본형	45세~85세	45세 ~85세
	거치형		만15세 ~ (연금개시나이-1)세
거치형	기본형		0세 ~ (연금개시나이-1)세
	무사망형		0세 ~ (연금개시나이-3)세

납입기간 일시납

가입한도 보험료 500만원~ 최고 200억
(위험직급별 가입한도 상이, 만원단위 입력)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 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전 일의무를 준수하셔야 하며 반드시 자필서명을 하셔야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일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 진단일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 필한 사항(계약전 일의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일러야 하며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계약을 해지하여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를 드리지 않으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진 경우,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진 경우,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진 경우, 위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의 위험직(업)종 또는 운전차량 종류 및 용도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준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 체결시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청약일의 청구제도를 이용하여 계약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인납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 보장계약이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의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모집중사자가 계약에 관한 중요내용의 설명 등을 잘 이행하는지 확인 하십시오.** 청약을 할 때 약관 및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 등을 듣지 못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상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중인 경우 회사는 14일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합니다)으로 정하여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때까지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됩니다.
-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 되고 보험의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작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적용을 중 보험료 산출기초에 관한 안내** 이 보험상품의 보장부분에 사용되는 비율은 연복리 3.0%입니다. 다만, 동일은 적립금 및 해지환급금을 보증하는 비율은 아닙니다. 이 상품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5년 이내 연복리 2.0%, 5년초과 10년 이내 연복리 1.5%, 10년초과 연복리 1.0%입니다.
- **세제 혜택** 보험차익(만기보령 또는 해지환급금에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배당에 관한 안내**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가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특정 보험 제외)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안내** 생명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불만사항이 있을시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 당사보험상담안내 : 콜센터 1588-2286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당사 소비자 보호팀으로 1차 신청하시고 처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도와드립니다.

방카슈랑스 부조리 신고센터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대충과 연계하여 보험가입을 강요하거나 기존에 가입한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도록 한 후 새로운 계약의 가입을 권유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한 경우, 금융감독원 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Tel : 국번없이 1332, 홈페이지 : www.fss.or.kr)

● **홍국생명 고객센터 콜센터** 1588-2286

● **직원전용** 1644-5611

● **홍국생명 BA 영업본부** 02-2002-7458, 7464

홍국생명보험주식회사

03184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68(신문로1가)
02-2002-7000 www.heungkuklife.co.kr

제작일자 : 2016.3.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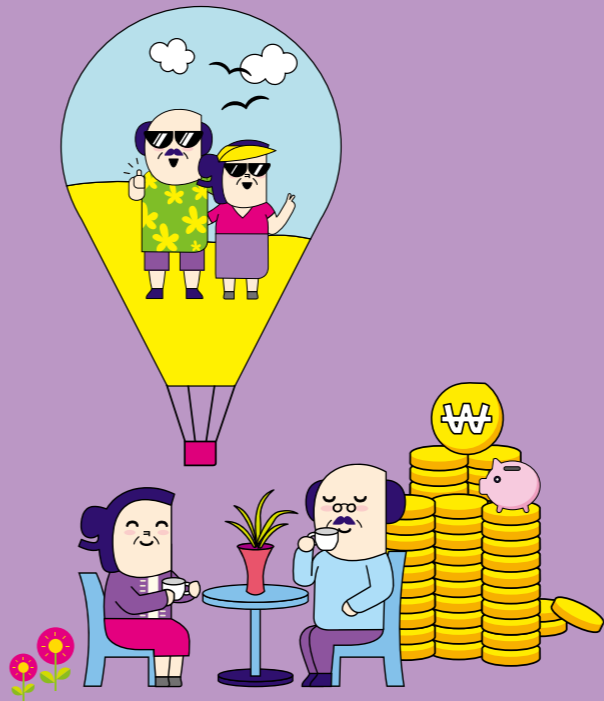
준법감시인 심의필 2016-FA6-000006(2016.3.24)

보험사



무배당

드림즉시연금보험 1604



주요상품특징



상품특징

1. 가입 1달 후부터 연금지급

- 평균수명이 길어지는 노령화시대에 가입즉시 연금을 지급하여
필요로운 노후보장 [즉시형 : 종신연금형, 상속연금형(종신형, 만기형)]

2. 시중 실세금리에 따른 연금지급

- 시중금리 반영한 공시이율 적용(2016년 3월 현재 연복리2.95%) 하여
연금지급
- 최저보증이율 5년 이내 2.0%, 5년 초과 10년 이내 1.5%, 10년 초과 1.0%로
안정성 확보

3. 계약자 Life Style에 맞는 연금선택 가능

- 개인형(10년보증, 20년보증, 30년보증, 100세보증, 기대여명보증)
- 종신연금형, 상속연금형
- 국민연금 공백기 조기집중형 활용(2배, 3배, 4배 가능)
(다만, 청약시에는 2배만 가능)

4. 유연한 자금 활용(거치형)

- 연금개시연령 자유롭게 선택
- 추가납입, 중도인출 활용

5. 0세부터 82세까지 가입 가능(거치형 무사망형에 한함)

- 초기가입으로 복리효과 확대
- 가입시 경험생명표 적용으로 평균수명연장에 대비

6. 비과세 혜택

-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보험차익 비과세
- 비과세 적용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

보장내용

즉시형(사망보험금)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상속연금형에 한함)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일시납보험료의 10% +사망당시의 적립액
만기보험금 [상속연금형(만기형)에 한함]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있을 때	만기시점의 연금계약의 적립액

* 계약소멸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연금지급 종료시

거치형 기본형(사망보험금)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일시납보험료의 10% +사망당시의 적립액
사망보험금 (상속연금형에 한함)	피보험자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일시납보험료의 10% +사망당시의 적립액
만기보험금 [상속연금형(만기형)에 한함]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있을 때	만기시점의 연금계약의 적립액

* 계약소멸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연금지급 종료시

거치형 무사망형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80%이상 재해장해보험금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장애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애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최초 1회만)	매월 30만원 (36회 지급)

* 계약소멸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연금지급 종료시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사망시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 기준)와 사망당시의 적립액 중 큰 금액을 지급

추가납입/중도인출

추가납입

- 납입한도 : 기본보험료 총액의 200%
- 즉시형: 보험기간 중 수시로 납입 가능[상속연금형(종신형)에 한함]
- 거치형: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수시로 납입가능(다만, 연금형태가 상속연금형(종신형) 경우에 한하여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에도 납입이 가능)

*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해서는 사입비가(1.5%) 공제됩니다.

중도인출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다만, 연금형태가 상속연금형(종신형)인 경우는 보험기간) 중 인출가능
- 1회당 한도는 인출 당시의 해지환급금의 50%이내로 연간 12회까지 가능
- 인출시점에서 최소 적립액 이상의 해지환급금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 10년 이내의 인출금액의 합계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인출수수료 : 없음

다양한 연금지급

연금지급방법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종신 연금형	개인 연금형	보장개시일로부터 만1개월 계약해당일(거치형의 경우 연금개시시점)부터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월액을 매월 계약해당 일에 지급(10/20/30년보장지급, 100세[(101세-연금지급나이)년] 보장지급, 기대여명보장지급)
	개인 연금형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때	보장개시일로부터 만1개월 계약해당일(거치형의 경우 연금개시시점)부터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월액을 매월 계약해당 일에 지급 다만, 계약자가 선택한 집중지급보증기간 중에는 연금월액에 지급배수(2배)를 곱한 금액을 지급 (5년/10년/15년/20년형)
상속 연금형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보장개시일로부터 만1개월 계약해당일(거치형의 경우 연금개시시점)부터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월액을 매월 계약해당일에 지급

* "기대여명"이란 관련세법에 따라 통계표(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에 따른 선행연령별 기대여명 연수(소수점이하는 버린다)를 말하며 최소 5년이상으로 합니다.

다양한 연금지급 예시

[예시기준: 즉시형, 남자50세, 일시납1억원, 연복리2.95%, 연금월액]

연금지급형태		최저보종이율적용시 (5년이내 2.0%, 5~10년이내 1.5%, 10년초과 1.0%)	공시이율 연복리 2.95% (Min(공시이율, 평균공시이율))	공시이율 연복리 2.95% (공시이율)
		개인연금형 (10년 보장형)	296,450	347,175
개인연금형 (20년 보장형)	293,414	343,574	343,574	
개인연금형 (30년 보장형)	287,179	336,824	336,824	
개인연금형 (100세 보장형)	246,581	298,046	298,046	
종신 연금형	개인형			
	기대여명 보증형	287,179	336,824	336,824
	조기집중형 (5년형)2배	504,412	578,200	578,200
	조기집중형 (10년형)2배	442,799	503,314	503,314
	조기집중형 (15년형)2배	398,162	452,017	452,017
조기집중형 (20년형)2배	364,321	414,825	414,825	
상속 연금형	종신형			
	생존시	152,955	225,609	225,609
	사망시	92,231,950	92,231,950	92,231,950
	만기형			
10년형	122,282	197,390	197,390	
15년형	134,262	209,258	209,258	
20년형	140,031	214,897	214,897	

* 상기 예시금액은 최저보종이율,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따른 현재(2016년) 평균공시이율(3.5%)과 가입시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 가입시 공시이율(2016년 3월 적용 연복리 2.95%)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향후 공시이율 변동시 실제 수령액은 표시된 금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 생존여금의 계산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생존여금도 변경됩니다.

* 종신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후 보장지급기간(10년, 20년, 30년, 100세, 기대여명보증형)안에 사망시에는 보장지급기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연금지급일에 드립니다.

* "기대여명"이란 관련세법에 따라 통계표(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에 따른 선행, 연령별 기대여명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말하며, 최소 5년이상 보장합니다.

* 종신연금형 중 조기집중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집중보증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에는 기존 연금월액에 지급배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또한, 집중보증지급기간안에 사망시에는 집중보증지급 기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연금지급일에 드립니다.

* 조기집중형의 경우 집중보증지급기간 종료 후에는 상기 연금액을 지급배수로 나눈 값을 지급합니다.

* 조기집중형 가입시점에는 지급배수 2배만 입력 가능하며, 청약이후 연금개시전에는 3배, 4배도 신청가능합니다.

* 생존연금의 연금월액은 매년 계약해당일의 생존자에 대하여 해당 보험년도 중 매월 계약해당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해당 보험년도의 연금월액(12회분)을 선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즉시형, 상속연금형(종신형)은 제외됩니다.

* 해당월에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해당일로 봅니다.

* 100세보증형이던(101세-연금개시나이)년보증형을 할합니다.

* 종신연금형(정액형, 조기집중형)을 선택하실 경우 연금지급개시 후에는 계약을 해지하실 수 없습니다.

* 종신연금의 경우 보증지급기간에 따라(기대여명)을 초과하는 경우(비과세)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조기집중형의 경우 집중기간과 지급배수에 따라 비과세금액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예시

즉시형

[기준: 남자55세, 일시납1억원, 즉시형(상속형, 10년만기형), 연복리2.95%(단위:천원,%)]

경과 기간	납입보험료	최저보종이율적용시 (5년이내 2.0%, 5~10년이내 1.5%, 10년초과 1.0%)		공시이율 연복리 2.95% (Min(공시이율, 평균공시이율))		공시이율 연복리 2.95% (공시이율)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100,000	96,008	96.0%	95,990	96.0%	95,990	96.0%
3년	100,000	96,845	96.8%	96,801	96.8%	96,801	96.8%
5년	100,000	97,712	97.7%	97,658	97.7%	97,658	97.7%
7년	100,000	98,615	98.6%	98,561	98.6%	98,561	98.6%
10년	100,000	100,000	100.0%	100,000	100.0%	100,000	100.0%

거치형

[기준: 남자50세, 60세연금개시, 일시납1억원, 거치형(무사망형(정액형)), 연복리2.95%(단위:천원,%)]

경과 기간	납입보험료	최저보종이율적용시 (5년이내 2.0%, 5~10년이내 1.5%, 10년초과 1.0%)		공시이율 연복리 2.95% (Min(공시이율, 평균공시이율))		공시이율 연복리 2.95% (공시이율)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100,000	97,400	97.4%	98,307	98.3%	98,307	98.3%
3년	100,000	101,088	101.1%	103,944	103.9%	103,944	103.9%
5년	100,000	104,925	104.9%	109,918	109.9%	109,918	109.9%
7년	100,000	107,851	107.9%	116,249	116.2%	116,249	116.2%
10년	100,000	112,406	112.4%	126,465	126.5%	126,465	126.5%

* 상기 예시금액은 최저보종이율,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따른 현재(2016년) 평균공시이율(3.5%)과 가입시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 가입시 공시이율(2016년 3월 적용 연복리 2.95%)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환급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공시이율 변동 시 해지환급금도 변경됩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최저보종이율은 5년이내 연복리2.0%, 5년초과 10년이내 연복리1.5%, 10년초과 연복리1.0%입니다.

*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하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됩니다.

* 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미상각신계약비(해지공제액)포함)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직전 1년간 적용이율 변동현황

기준년월	2015. 4월	2015. 5월	2015. 6월	2015. 7월	2015. 8월	2015. 9월
적용이율	3.50%	3.40%	3.35%	3.30%	3.30%	3.20%
기준년월	2015. 10월	2015. 11월	2015. 12월	2016. 1월	2016. 2월	2016. 3월
적용이율	3.10%	3.00%	2.98%	2.98%	2.98%	2.95%

*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매 1개월간 확정 적용됩니다.

* 적용이율 제공기간은 가입설계서를 제공하는 월의 직전 1년임